

신청마감 및 참가비 완납	2022년 2월 28일
접수일	
접수번호	

202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참가신청서

1. 참가업체내역

구분	국문		영문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우편번호		
세부전시품목	품목명	소재, 용도 등		
국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담당자		부서	직위	
전화		팩스	홈페이지	

2. 사용신청내역(설치비 및 사용료 포함)

1부스 : 9㎡

구분	신청내역	신청금액	단가(부가세 별도)
부스	기본부스 () 개 부스	원	2,800,000원
	독립부스 () 개 부스	원	2,500,000원
전기	단상 220V (60Hz)	kW	50,000원/kW (주간만공급)
	삼상 220V (60Hz)	kW	
	삼상 380V (60Hz)	kW	
	24시간용 (220/380V)	kW	70,000원/kW(24시간 공급)
급배수	개소	원	150,000원/개소
압축공기	개소	원	150,000원/개소
LAN (인터넷연결)	PORT	원	150,000원/PORT
소계			원
부가세 (10%)			원
합계			원

※ 당사는 202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의 참가규정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참가 신청합니다.

※ 참가 신청시 참가비의 50% 납입, 잔액은 신청마감일(2022. 02. 28)까지 납부.

202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납부처 : 부산은행 042-01-035519-9

예금주 : 주식회사 벅스코

유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벅스코 전시사업2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TEL: 051) 740-7516

FAX: 051) 740-7640

E-mail: nekorea@bexco.co.kr

202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2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을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벅스코(BEXCO)"를 말한다.

제2조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신청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소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 총액의 50%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시면적은 신청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전시면적을 할당 기준에 의거 배정하며, 잔금은 신청마감일과 동일한 2022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참가비

기본참가비는 기본부스일 경우 부스당 2,800,000원(부가세별도), 독립부스일 경우 부스당 2,5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제4조 참가비 내역

참가비에는 전시장소, 24시간 외곽경비, 통로청소, 홍보, 전시회 디렉토리제공 등이 포함된다

제5조 전시면적 할당

1. 주관자는 신청 접수순,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면적 및 위치를 할당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 할당된 전시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관측이 규정한 기간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면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측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주관측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관자가 부스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측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주관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9조 전시실 관리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전시면적을 벗어날 수가 없

으며, 주관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현장판매

전시회의 참가목적은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실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데 있으며,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가 없다. 단, 주관자가 별도로 정한 특별 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위험부보

전시자는 전시 스탠드 및 전시품의 도난, 훼손 또는 여하한 종류의 개인 상해에 대하여도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관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혹은 전시회 및 전시장 규정을 위반하고 주관자의 시정요구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을 시,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입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에서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기 납입된 참가비에서 차감하고 잉여금은 반환한다. (단, 위약금이 기 납입액을 초과할 수 없다)
 - 행사개시 30일 이전 취소(축소) :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50%
 - 행사개시 30일 이내 취소(축소) :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100%

제14조 보충규정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BEXCO의 제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02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사무국